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 명 수\*\*

### 〈국문초록〉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에서 7개의 전문 법률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배출하여 보다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 법률과목 지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과 합격률 저하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 실제 필요성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기존에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출범 15년이 지났고, 25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이 정착되었으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 등 시대적 변화 상황에 따라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도 개선될 시기가 되었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취지, 현행 선택과목 시험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2과목(6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한 학점 이수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가 시험이 가지는 공적 신뢰성, 해당 법률과목에 대한 전문성 검증, 교육의 균질성 보장 등의 관점에서 공통시험 실시가 필요하며, 과목 상호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당 법률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점검 및 평가의 객관성 보장 등을 위해 객관식 P/F 시험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시행 시기는 학습 부담 완화 및 선택과목 선정의 자율성 담보를 위해 1년에 여름, 겨울 등 두 번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학점 이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 수강을 이수 요건으로 인정해 주거나, 해당 선택과목에 대한 공통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고 안착이 되면, 향후에는 학점 이수제 취지에 맞도록 학점 이수 이후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학점 이수만으로 조건충족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 시험 범위

• 투고일 : 2023.12.26. / 심사일 : 2024.01.19. / 게재확정일 : 2024.01.22.

\* 이 글은 지난 2023. 9. 21.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된 법무부 법조인력과 주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에서의 발제자료를 기초로 2023. 10. 20.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자료를 다시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하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sup>1)</sup>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던 기존의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중심축이 옮겨진 것이다.<sup>2)</sup>

「변호사시험법」<sup>3)</sup>에서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외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변호사시험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sup>4)</sup>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 이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고, 이에 2018년에는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논의도 진행되어 절대점수제, 선택과목 패스제, 의무연수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나<sup>5)</sup> 실제 개선된 사항은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 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 2)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270-271면.
  -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시행 2009. 8. 29.)되었다.
  - 4) 2011. 5. 19. 법률 제10629호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시행 2011. 7. 20.)되어, 명칭을 ‘지식재산권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다.
  - 5)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법무부, 절대점수제·선택과목 패스제·의무연수 개선 등의견수령 후 제도 개선 논의, 머니투데이 2018. 4. 3.

변호사시험 관련 법령에서 7개의 전문 법률과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실무가를 배출하여 보다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전문 법률과목 지정에 대한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기본 필수과목에 대한 공부 부담<sup>6)</sup>과 합격률 저하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 실제 필요성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험 부담이 적은 과목(국제거래법, 국제법, 환경법 등)을 선택하고,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sup>7)</sup> 그리고 이러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법전문 특성화 교육 및 전문 법률과목 교육의 어려움으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up>8)</sup>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택과목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기존처럼 반복된 논의에 그치는 것은 아닐지 등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2023년 8월 모의고사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CBT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끝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CBT 방식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CBT 방식의 시험 실시 필요성은 이전부터 주장되어 왔으나<sup>9)</sup>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 본격적 시행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무부가 주도하여 이러한 CBT 방식의 시험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 개선도 이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 맞게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선택과목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및 법조실무가 양성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니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이에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 등 현재 주장되고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검토하고, 특히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라고 판단되는 선택형, 학점 이수 조건, P/F 방식 시험 실시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정책, 법철학 등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보기로 한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40216358239404>)

- 6) 김인재, 앞의 논문, 277면.
- 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3’ 쏠림현상 심화, ‘빅3’ 과목에 집중하는 변호사 시험, 다양성 부재, 합격률 전년보다 감소… 선택과목 쏠림현상 심화, 다양한 법률 분야 전문성 갖춘 변호사 양성 필요. 2023. 5. 17. 법률저널(<http://www.lec.co.kr>)
- 8) [사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 서둘러야. 2022. 5. 12. 법률저널(<http://www.lec.co.kr>); [사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3’ 쏠림 막을 대책 필요하다. 법률저널 2023. 5. 1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6>)
- 9)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0., 47면.

## II.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의 문제점<sup>10)</sup>

### 1.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시험 현황

		국제법	국거법	노동법	조세법	지재법	경제법	환경법	합 계
2012	응시자	94	413	516	59	82	228	273	1665
	합격자	71	346	453	54	77	210	240	1451
2013	응시자	60	804	405	45	88	285	359	2046
	합격자	38	584	296	36	76	222	286	1538
2014	응시자	63	1032	359	33	61	225	519	2292
	합격자	37	669	240	25	41	163	375	1550
2015	응시자	64	1116	319	49	52	192	769	2561
	합격자	35	631	197	32	32	131	507	1565
2016	응시자	95	1240	405	57	73	199	795	2864
	합격자	46	625	248	38	44	111	469	1581
2017	응시자	181	1397	439	71	80	270	672	3110
	합격자	92	695	256	45	35	159	318	1600
2018	응시자	241	1404	415	81	95	309	695	3240
	합격자	113	636	237	48	39	173	353	1599
2019	응시자	236	1439	334	108	114	378	721	3330
	합격자	93	678	192	66	56	203	403	1691

10)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국가들의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해서는 강명수,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0., 62-70면; 법무부, 「로스쿨 특성화분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63-161면;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2019. 12., 37-47면 참고. 이러한 주요국가의 시험제도를 살펴 보면 선택과목 쓸림 현상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와 시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13년경 선택과목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수험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였지, 특정과목에의 쓸림 현상과는 무관한 논의였으며(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56면 이하 참고), 그 이후 사법시험위원회 회의 의사록([https://www.moj.go.jp/shingi1/iinkai\\_shihoshiken.html](https://www.moj.go.jp/shingi1/iinkai_shihoshiken.html))에서도 더 이상 선택과목 개선 논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에서의 논의도 외국 제도나 논의에 대한 참고가 아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토대로 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다.

2020	응시자	303	1224	242	99	115	427	906	3316
	합격자	140	590	132	59	51	237	559	1768
2021	응시자	298	1147	203	103	121	386	898	3156
	합격자	141	584	104	68	60	223	526	1706
2022	응시자	348	1291	169	87	98	336	868	3197
	합격자	139	699	96	56	33	185	504	1706
2023	응시자	382	1559	138	71	103	258	744	3255
	합격자	160	844	81	39	40	136	425	1725

## 2. 각 과목별 응시인원의 증감 현황

선택과목별 응시현황 및 합격자 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원 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택과목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 가. 연도별 선택과목 응시인원 수

#### (1) 2012년

노동법(516) - 국거법(413) - 환경법(273) - 경제법(228)-국제법(94)-지재법(82)-조세법(59)

#### (2) 2013년

국거법(804)-노동법(405)-환경법(359)-경제법(285)-지재법(88)-국제법(60)-조세법(45)

#### (3) 2014년

국거법(1032)-환경법(519)-노동법(359)-경제법(225)-국제법(63)-지재법(61)-조세법(33)

#### (4) 2015년

국거법(1116)-환경법(769)-노동법(319)-경제법(192)-국제법(64)-지재법(52)-조세법(49)

(5) 2016년

국거법(1240)-환경법(795)-노동법(405)-경제법(199)-국제법(95)-지재법(73)-  
조세법(57)

(6) 2017년

국거법(1397)-환경법(672)-노동법(439)-경제법(270)-국제법(181)-지재법(80)-  
조세법(71)

(7) 2018년

국거법(1404)-환경법(695)-노동법(415)-경제법(309)-국제법(241)-지재법(95)-  
조세법(81)

(8) 2019년

국거법(1439)-환경법(721)-경제법(378)-노동법(334)-국제법(236)-지재법  
(114)-조세법(108)

(9) 2020년

국거법(1224)-환경법(906)-경제법(427)-국제법(303)-노동법(242)-지재법  
(115)-조세법(99)

(10) 2021년

국거법(1147)-환경법(898)-경제법(386)-국제법(298)-노동법(203)-지재법  
(121)-조세법(103)

(11) 2022년

국거법(1291)-환경법(868)-국제법(348)-경제법(336)-노동법(169)-지재법(98)-  
조세법(87)

(12) 2023년

국거법(1559)-환경법(744)-국제법(382)-경제법(258)-노동법(138)-지재법  
(103)-조세법(71)

나. 연도별 선택과목 합격인원 수<sup>11)</sup>

(1) 2012년

노동법(453) - 국거법(346) - 환경법(240) - 경제법(210) - 지재법(77) - 국제법(71) - 조세법(54)

(2) 2013년

국거법(584) - 노동법(296) - 환경법(286) - 경제법(222) - 지재법(76) - 국제법(38) - 조세법(36)

(3) 2014년

국거법(669) - 환경법(375) - 노동법(240) - 경제법(163) - 지재법(41) - 국제법(37) - 조세법(25)

(4) 2015년

국거법(631) - 환경법(507) - 노동법(197) - 경제법(131) - 국제법(35) - 지재법(32) - 조세법(32)

(5) 2016년

국거법(625) - 환경법(469) - 노동법(248) - 경제법(111) - 국제법(46) - 지재법(44) - 조세법(38)

(6) 2017년

국거법(675) - 환경법(318) - 노동법(256) - 경제법(159) - 국제법(92) - 조세법(45) - 지재법(35)

(7) 2018년

국거법(636) - 환경법(353) - 노동법(237) - 경제법(173) - 국제법(113) - 조세법(48) - 지재법(39)

---

11) 밑줄 부분은 응시인원 순위와 차이가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임.

(8) 2019년

국거법(678)-환경법(403)-경제법(203)-노동법(192)-국제법(93)-조세법(66)-지재법(56)

(9) 2020년

국거법(590)-환경법(559)-경제법(386)-국제법(140)-노동법(132)-조세법(59)-지재법(51)

(10) 2021년

국거법(584)-환경법(526)-경제법(223)-국제법(141)-노동법(104)-조세법(68)-지재법(60)

(11) 2022년

국거법(699)-환경법(504)-경제법(185)-국제법(139)-노동법(96)-조세법(56)-지재법(33)

(12) 2023년

국거법(844)-환경법(425)-국제법(160)-경제법(136)-노동법(81)-지재법(40)-조세법(39)

### 3. 선택과목 시험의 문제점

선택과목별 응시인원 증감 추이를 보면, 현재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에 집중적으로 쏠려있으며 최근 국제법 응시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거래법의 경우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선택과목 1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 환경법의 경우 3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노동법을 제치고 ‘빅2’에 들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국제법 과목의 응시인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제거래법 및 환경법과 함께 소위 ‘빅3’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sup>12)</sup> 특정과목에의 쏠림 현상이 현대사회의 전문적 법률분야로서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 등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또 이들 분야에서 법조인의 역

---

12) [사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3’ 쏠림 막을 대책 필요하다. 법률저널 2023. 5. 1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6>)

할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택과목에의 쏠림 현상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즉, 특정 선택과목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sup>13)</sup> 국제거래법의 경우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해야 할 분량이 적고<sup>14)</sup>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경우 조문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sup>15)</sup> 이러한 학습부담에 따른 선택과목 쏠림 현상은 비단 최근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것으로, 2014. 5. 16.자 법률저널에서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도 ‘쏠림현상’ 심화”라는 타이틀 하에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로스쿨생들이 선택과목 결정시 전문분야의 특화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공부량이 적고, 과락의 회피 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6)</sup>

한편, 특정 선택과목 쏠림현상은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sup>17)</sup>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학습이 특정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암기식 학습에 의존...”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sup>18)</sup>

13) 김인재, 앞의 논문, 276-277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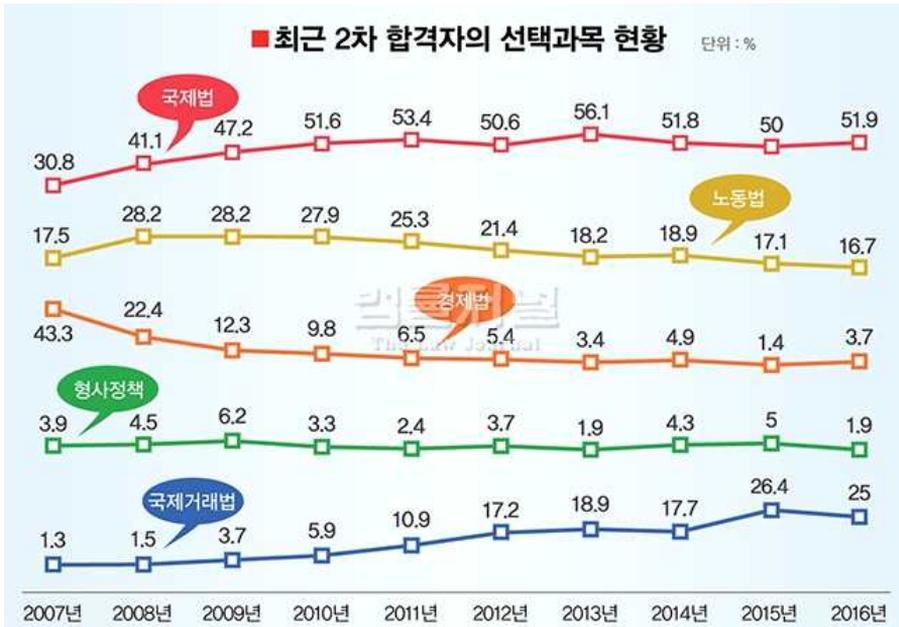
14) “실무에 진출해 국제거래법 관련 분쟁을 다루게 될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43%의 학생들이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세법 법전이 700쪽, 노동법의 경우 300쪽인 데 비해 국제거래법은 25쪽에 그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15)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이틀 만에 끝내는 국제거래법’이라는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6)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2021. 5. 20. 법률저널에서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10명 중 8명 ‘빅3’에 쏠림”이라는 타이틀 하에 “국제거래법 편중이 높은 것은 특성화와 중요성의 문제보다는 학습과 수험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기본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분량이 적고 준비 기간이 짧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하였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776>)

17) 올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선택과목을 보니... 국제법 편중 강화...국제거래 증가 ‘주춤’(법률저널 2016. 10. 27.)(<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8>);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특정과목 쏠림 뚜렷, 사시 ‘국제법’... 변시 ‘국제거래법’에 편중(법률저널 2016. 10. 28.)(<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9>)

18)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114-115면.



### III. 선택과목 개선안에 대한 검토

#### 1. 선택과목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선택과목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주장되어 왔었고 선택과목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제도 취지<sup>19)</sup>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개정의 필요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을 듯 싶지만, “‘빅3’ 쏠림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과목 ‘학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점 이수제’나 ‘Pass/Fail’ 제도는 학생들이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법률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이 관심 있고 잠재적으로 전문화하고 싶은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로스쿨의 교육 취지인 법률 전

19)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결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을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이 법률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sup>20)</sup>도 있다.

선택과목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과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및 시험을 전담하는 각 선택과목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고,<sup>21)</sup> 따라서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수긍할 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 및 시험 현실,<sup>22)</sup> 각 과목별 특성에 따른 수험부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선택과목 제도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제는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신중하고 어렵게 마련한 기존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이 어둠의 길을 계속 방황하는 것보다,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발전적 전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개선안을 찾아 그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2. 유형별 개선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

### 가. 소극적 개선방안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가급적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운영 경험을 살리고 또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선

20) [사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3’ 풀림 막을 대책 필요하다, 법률저널 2023. 5. 1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6>)

21)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성중탁, 앞의 논문, 49-50면 참고.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그러한)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택의 편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제도상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여 바람직한 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는 박인호,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2023. 10. 20., 토론문 413면.

22) 선택과목 문제 이외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도 형해화되고 있는데, 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듯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된 가장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에 주력하는 법전원 교육 정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변시 합격률에 법전원의 평가가 좌우되는 현재의 교육 여건 속에서 특성화 과목을 앞세운 법전원별 특화교육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는 견해도 있다.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방안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동일한 선택과목 시험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만 점수제가 아닌 P/F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의 선택과목 시험은 학습분량에도 차이가 있지만, 선택과목 점수가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점수에 산입됨으로 인해 득점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시험형태를 유지하되 다만 P/F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일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목별 학습분량에 따른 특정과목 쏠림 현상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서술형 채점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특히 학생들의 선택이 적은 선택과목에서 F 점수 부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둘째, 현재의 서술형 시험은 출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수험준비에 부담이 되고, 채점재량이 넓어 객관성 담보가 약하며, 과목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선택과목 시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출제 방식을 선택형으로 하면서 P/F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23)</sup> 이 경우 채점재량 배제, 시험점수의 객관화, 과목별 시험점수 차등의 최소화, 학습부담 완화 등의 장점이 있겠으나, 과목별 수험부담의 차이 상존, 출제수준 등에 따른 합격률 또는 점수의 불확실성,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의 수험화 경향 심화 등의 단점이 예상된다.

셋째, 현재의 시험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학생들의 수험부담 완화를 위해 출제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다.<sup>24)</sup>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제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각 선택과목별로 출제범위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즉,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각 선택과목별 출제대상(법률)을 줄이거나, 현재의 출제대상(법률)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부 출제 영역을 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후자보다 전자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학습부담의 완화, 필수과목에의 공부 집중 가능, 원하는 과목에 대한 선택가능성 증대, 선택과목 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 선택과목 도입취지에 역행,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 수업의 파행 가중, 각 과목별 수험부담 및 점수배점에서의 차등 상존으로 인한 특

23) 선택형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과 유사하며, 다만 P/F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4) 이러한 출제범위 조정은 앞서 살펴본 첫째(서술형 P/F 방식) 또는 둘째(선택형 P/F 방식) 개선안과도 병행하여 다뤄질 수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정 과목 풀림 현상 해소에 한계(지금도 일부 과목들의 경우 사실상 출제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 문제 개선에 도움이 안되고 있음<sup>25)</sup>) 등 단점이 있다.

그 이외에 현행 선택과목 시험을 법조윤리시험과 같이 변호사시험과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방안도 지금과 같은 출제범위와 출제형태가 유지되는 한 특정과목에의 풀림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분리실시를 하면서 앞서 살펴본 방안들과 결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적극적 개선방안 - 학점 이수제(선택과목 시험 폐지)

지금의 선택과목 시험과 달리 ‘교육’에 초점을 둔 학점 이수제 도입으로서, 선택과목별로 일정 학점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시켜 주거나 또는 P/F 시험 등 지금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다. 학점 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 제시가 있어 왔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점 이수제에 의하면 학습부담의 완화, 선택과목별 점수배점 차이 등에 따른 문제점 시정, 선택과목 도입 취지에 맞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점 이수 과목에 대한 전문성(또는 최소한의 법적 지식 함양) 평가의 문제, 각 로스쿨에서의 개별적 교육 및 성적처리에 따른 공정성·신뢰성 문제, 학점 이수제 운영의 학교별 재량 인정범위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 다. 그 이외의 개선안

##### (1) 로스쿨 교육의 개선과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시장의 수요와 로스쿨의 교육 과정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로스쿨은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로스쿨은 실제 법률 사례를 다루는 프로젝트 기반의 과정을 도입하거나, 법률 클리닉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방

25) 강명수, 앞의 논문, 74면 주33) 참고.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결국,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빅3’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로스쿨의 교육 방식과 내용, 그리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로스쿨은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 전문가가 사회의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26)</sup>

## (2) 특정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해당 선택과목 시험 면제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다른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전문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소지자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노동법 등 선택과목에 대한 시험면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능력시험’<sup>27)</sup>이 있는데 매년 2회 실시하며(2022년 제25회 시험까지 약 6만 명 응시) 990점 만점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1급(900점 이상)부터 7급(300~399점)으로 나뉘지며 299점 이하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지식재산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지적재산권법 시험을 면제시켜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평가

### 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선택과목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도 있다.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과목 시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합격률이 획기적으로 상향되지 않는 한 현재의 문제가

26) [사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빅3’ 쏠림 막을 대책 필요하다, 법률저널 2023. 5. 1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6>)

27) 지식재산능력시험은 2018년 1월 국가공인자격을 최초 취득하였고, 2023년 1월 국가공인자격 재인증을 받았으며, 기술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취득사항에 기재가 가능하게 되고 2020년부터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을 인정받아 급수에 따라 최대 25학점 취득이 가능하다.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합격률 상향은 변호사시험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이슈이며, 이른 시기 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28)</sup>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변경을 할 것인지를 선택이 남게 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이 이제 15년 정도에 이르고, 기존 선택과목 제도에 대한 문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특정 과목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의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sup>29)</sup>

#### 나. 제도개선의 방향

선택과목 제도를 개선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형태의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도입·운영할 것인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각 개선안마다 장단점이 있어 지금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소극적 개선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행 선택과목 시험제도는 ‘교육’이 아닌 ‘시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은 고려함이 없이 ‘시험’형태만을 바꾸는 소극적 개선방안은 결국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학점 이수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30)</sup>

학점 이수제 도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

28) 2018년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면 제도개선 논의를 할 당시에도 ‘합격률 조정’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무부는 해당 사항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변호사시험 전면 제도개선 착수, 법무부, 절대점수제·선택과목 패스제·의무연수 개선 등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 논의, 머니투데이 2018. 4. 3.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40216358239404>)

29) 종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의 의견, 학계의 의견에서도 선택과목 제도 유지 견해 보다는 폐지 견해가 다수였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72-72면.

30) 2014. 5. 16. 법률저널에서도 “변호사시험에서조차 공부하기 쉽고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져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초 시험에 다양한 법률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 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더욱 힘이 쏠리는 모양새다.”라고 한다.

으로서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되는데,<sup>31)</sup>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는 것 같다. 특히 학점 이수제를 조건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할 것인지의 논의, 완화된 시험 형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학점 이수의 조건 및 학점부여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 IV. 학점 이수 조건의 선택형 P/F 시험의 시행 방안

##### 1. 시험제도의 병행 및 그 방향

###### 가. 시험제도의 병행 여부

별도의 선택과목 시험 없이 일정 학점 이수만으로 조건충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학점 이수 이외에 선택과목 시험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학생들의 수험부담 완화, 선택과목 선정의 폭 확대, 법전문 교육의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고, 그에 반해 전문성 검증에 대한 문제, 법전문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의문, 각 학교별 교육의 차별화에 따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전문성 확보에 대한 객관성 보장 및 최소한의 교육 내실화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들의 수험 부담 및 특정 선택과목 풀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sup>32)</sup>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017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당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안과 이중 제3안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31) 종래 조사 결과에서도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학생(47%) 및 교수(54%)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74면. 또한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2023. 10. 20. 발제에 대한 토론 의견들도 학점 이수제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신영수,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2023. 10. 20., 토론문, 411면 및 박인호, 앞의 토론문, 414면.

32)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는 특성화 과목 교육의 포기나 다름없으며, 점차 전문성을 토대로 분화되고 있는 변호사업계 실무 현황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 견해도 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20231005)

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8월에 다시 이러한 의견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 제출한 바 있다.<sup>33)</sup>

<p>제1안 (집중이수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과목을 각각 1분야로 하여 그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li> <li>* 장점 - 현행 시험제도를 존중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설득이 용이함/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li> <li>* 단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3과목 이상 개설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학생이 몰리고 다른 분야의 과목은 고사할 위험 있음</li> </ul>
<p>제2안 (확대이수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여기에 기초법·외국법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li> <li>* 장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과목군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시행이 용이함/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li> <li>* 단점 - 현행 시험제도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입법과정의 설득이 필요함</li> </ul>
<p>제3안 (<u>절충안, 2+2방식, 집중과 확대의 병행</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2과목 + 그 외 6개 분야와 기초법·외국법 등 과목군 중 2과목</li> <li>* 장점 - 위 절충안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기 용이하며, 집중과 확대의 방향을 모두 살린 것으로서 전문화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입법과정의 설득도 용이한 점이 있음.</li> <li>* 다만, 기초법·외국법 외에 금융법, 의료법 등 전문과목(현행 시험과목 외의 전문과목)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li> </ul>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학점 이수제를 전제로 하되 별도의 시험 시행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학점 이수제 도입에 긍정적인 선택과목 담당 교수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학점 이수 이외에 별도의 시험 제도는 실시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사실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조차도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별도의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전문법률 과목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순수 학점 이수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 및 지금까지의 시험 시행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검증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시험실시를

33) 강명수, 앞의 논문, 74-75면.

34) 김인재, 앞의 논문, 288면 이하; 정영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2023. 9. 21. 토론문 5면;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75면.

배제한 학점 이수제 도입 및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sup>35)</sup>

지금까지 선택과목 시험을 유지해 왔고 비록 단점도 있으나 최소한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으며<sup>36)</sup> 급격한 제도 변화보다는 단계적 변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sup>37)</sup> 등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지금보다는 완화된 형태의 선택과목 시험 병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험의 형태

학점 이수제를 전제로 하여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시험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시험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격시험이자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법시험과는 달리,<sup>38)</sup>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변호사시험법 제1조) 순수한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겠다.<sup>39)</sup> 즉, 변호사시험 자체가 자격시험인데 더하여, 선택과목 시험은 추가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더욱더 순수 자격시험으로서의 성질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sup>40)</sup>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선 현재와 같은 서술형 시험은 제도 개선 논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학생들

35) 학점 이수제 도입을 하게 되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의 질(質) 담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법무부, 「로스쿨 특성화분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179-180면 참고), 공통 시험 실시를 통해 그러한 우려는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36)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가시험이 가지는 공적인 신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95%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의사 국가시험도 합격률이 2022년 95.7%, 2023년 94.7%에 이르는데(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도 이와 비슷한 높은 합격률을 보임), 이러한 시험에 대해 시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정도의 높은 합격률이면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시험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37) 제도 개선이 실제 가능할지의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된 것이다.

38)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의 성격이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공무원임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참고.

39)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마608,2010헌마248,2011헌마263,2012헌마31(병합) 전원재판부.

40) 변호사시험은 ‘최소한’을 확인하는 ‘가벼운’ 시험이어야 한다. 김창록,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북대학교 2018. 6. 20.자 학술대회 자료집, 발제문 9면.

의 수험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학점 이수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안으로 선택형 P/F 시험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객관성 담보를 위해 선택형 시험으로 하고<sup>41)</sup> 수험부담 완화 및 선택과목별 편차 해소를 위해 P/F 형태<sup>42)</sup>로 운영하는 것이다.<sup>43)</sup>

#### 다. P/F 기준 및 점수산정 방식

선택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선택형 시험의 세부적인 내용(문항 및 지문의 수, PASS 기준 점수 등)을 정해야 하는데, 일응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을 기준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4지선다형 40문항(문항별 2.5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을 PASS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sup>44)</sup>

- 41) 지금과 같은 서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술형의 경우 출제범위나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선택과목 공부의 폭이 제한적이고, 지금과 같은 학습분량의 차이나 난이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신영수, 앞의 토론문, 411면 “기본과목의 공부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에, 선택과목의 학습분량은 시험에만 나오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법조 실무가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준” 참고). 그리고 선택과목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해당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선택형 시험이 이에 부합하며, 과목별 학습 분량 차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 42) 우리나라의 다른 자격시험 현황을 보면, (1) 선택과목이 없는 시험 : 법원행정고등고시,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시험, (2) 선택과목이 있으며 절대평가 또는 P/F 방식인 시험 : 변리사시험(2018년부터 2차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을 P/F 방식으로 운영), 세무사시험 및 공인노무사시험(1차 또는 2차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함), (3) 선택과목이 있으며 총점에 산입하는 시험 : 행정사 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입법고시가 있다(법무부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2023. 9. 21., 법무부 발제자료, 8-9면). 지금의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3)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및 입법고시에서도 2025년부터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률저널 2022. 7. 28. “국가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7급 응시 18세부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591>)  
법률저널 2023. 10. 30. “입법고시 2차 선택과목 폐지...8급 공채 PSAT 도입된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30>)
- 43) 시험 방식은 선택형의 방식이든 서술형의 방식이든 점수제 방식이 아닌 P/F 시험이면 양 방식이 어느 정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방식이든 무방하다는 견해로는 박인호, 앞의 토론문, 414면.
- 44) 이와 관련하여 국제거래법 등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40문항의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출제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오히려 지금의 시험 제도에서 해당 과목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교육 및 시험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각 선택과목별 학습 및 수험분량을 평준화한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시험범위가 한정적이어서 40문항의 객관식 문제 출제가 쉽지 않다면, 해당 과목의 시험출제 영역을 확대하여 이를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이 형평성의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과거 사법시험 당시에는 국제거래법의 출제범위가 ‘국제사법과 국제계약법’이었다가 2006년 개정에서 축소된 것도 참고가 될 수

## 2. 최소 이수 학점 및 이수 조건, 과목 구성

### 가. 최소 이수 학점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는 경우 최소 이수 학점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지만, 1과목(3학점)만으로 이수 조건이 된다고 하거나, 5과목(15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2과목(6학점), 3과목(9학점), 4과목(12학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중 2과목(6학점)은 이수요건이 너무 용이한 측면이 있고, 4과목(12학점)의 경우 전문성 확보는 보장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우리나라 법전문 교육 및 시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3과목(9학점)을 이수학점으로 하는 것이 일응 적절해 보일 수 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과목이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 국제법무 전문법무과정: 12학점, (2) 국제공법 전문법무과정: 6학점, (3) 금융법 전문법무과정: 9학점, (4) 해운통상법 전문법무과정: 9학점, (5) AI 플랫폼 경쟁법과 지적재산 전문법무과정: 12학점, (6)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 9학점 이상 이수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과목이수증을 수여한다(이수조건은 각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동일).<sup>45)</sup>

다만 여기서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선택과목 시험 병행을 전제로 한 학점 이수제라는 것이다. 즉,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3과목(9학점)이 적절해 보이지만, 학점 이수 이후에 선택과목 시험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 보면 3과목(9학점)이 과도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과목(6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병행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수 조건

학점 이수제를 시행할 경우 이수 대상 과목의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평가로 할 경우 이수 기준 학점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경우 P/F 기준 및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상대평가의 경우 학점 이수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견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

있겠다.

4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의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 2017. 10. 30. 제정.

반론이 될 수 있고, 앞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시한 견해도 ‘집중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각 대학원의 졸업요건이 대략 2.0 -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기준은 4과목 평균 C+(2.3) 이상’으로 제시하였다.<sup>46)</sup> 이와 같이 상대평가 실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상대평가에 의하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편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교수의 재량에 따른 성적 차등의 문제, 수강생 인원수에 따른 성적 처리 기준의 차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점 이수제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sup>47)48)</sup>

한편, 절대평가의 경우 학점 이수제 도입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특정과목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학업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다만 P/F의 처리를 각 담당교수의 재량에 맡길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각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P/F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각 과목별 필요 최소한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인지 담보할 수 없고 운영방향에 따라서는 해당 과목 수업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sup>49)</sup>

다만 여기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택과목 시험실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 선택과목 시험 자체를 폐지하고 순수한 학점 이수제를 도입한다면 (엄정한) 상대평가 실시가 타당할 수 있으나, 공통시험 실시의 조건으로 한 학점 이수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P/F 방식의 성적처리가 보다 타당할

46) 이와 유사하게, 1~2개의 전문법률분야를 선택해 각 분야 당 12학점 또는 그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게 하고, ‘B학점 이상 혹은 C+ 학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로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47) “학점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경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지금처럼 상대평가만 실시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 등의 이유로 학점을 신경써야 하므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학점 이수 조건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48) 상대평가는 개인의 학습성취도와 무관하게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적이 도출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할 변호사시험과 근본적으로 친하지 않은 제도이다.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 81면.

49) 절대평가 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선택과목의 특성(특히 수강생이 많지 않은 과목)상 FAIL 처리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교육이나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수 있는 것이다. 학점 이수제를 통해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한 전문성 검증은 공통시험 실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학점 이수 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상대평가로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sup>50)</sup> 추가적으로 만약 시스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각 과목별 기말시험은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채점도 공동채점의 형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등 시험 참고).

다. 과목 구성

학점 이수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수 과목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목 구성의 경우 현재 각 법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과목별 개설강좌 현황을 기초로 하여, 세부적인 조정 대상 및 범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각 법전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각 선택과목별 학점 이수 인정 과목 해당성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sup>51)</sup>

한편, 과목명을 어떻게 정하는지와 별개로 각 선택과목에서의 교육내용이 학교에 따라 전혀 달라도 무관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도

50) P/F의 문제가 PASS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최소한의 필요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이라면, 공통시험을 통해 이 부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시험병행형 학점 이수제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전문화·다양화·특성화를 가로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필수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는데(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76면), 지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제도 개선의 경우 보다 강하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달리 선택과목 성적에도 차별화가 필요하고 학생들도 이를 원하며(즉, 선택과목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과목의 높은 성적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음) 그와 같은 상대평가 운영이 오히려 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상대평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1) 참고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무과정의 운영 및 이수증명에 관한 지침에서는 6개의 전문법무과정별 교과과정을 특정해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6)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의 경우 아래와 같다.

구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이수 교과				
선택이수 교과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이너의 권리와 구제	상표와 지적재산권법	문화와 지적재산권법	지식재산권의 이론과 실무

결국 선택과목 시험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면 각 선택과목별로 교수진들이 모여 개설 강좌의 제목 및 주요 내용, 공통된 교육 자료(필요한 경우 공통 교재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3. 학점 이수 과목과 시험 응시 과목의 일치 문제

학점 이수제 도입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학점 이수 과목과 변호사시험 응시(선택)과목은 일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사정으로 인해 특정 선택과목의 개설이 안되는 경우 수험생들의 선택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특정 선택과목이 애초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해당 과목을 강의할 교수가 없거나 강의 시수 문제로 해당 선택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교원 수가 적고 그나마 연구년이나 장기 출장, 의무 교육 학점의 제한 등의 사유로 특정 선택과목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 수강을 학점 이수 요건으로 인정하게 해 주거나, 해당 선택과목에 대한 공통된 교육 프로그램(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차원에서 각 선택과목별 선택과목 이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속 학교에서의 해당 강좌 수강이 안되는 사정이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개설된 선택과목들 중 수강생 미달로 폐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3명 등 최소 개강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중 1명만으로도 개설이 되는 강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특정 선택과목에 대해 수강생이 1~2명 정도로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좌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강되게 되면, 그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기존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여 선택과목 학점 이수 자체가 제한되는 수험생이 입는 불이익과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인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정상성에서 일부 벗어나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수험생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학점 이수제가 도입된다면 수강생이 1인이더라도 강좌개설이 되

도록 공통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응시 학년 및 시험 시행 시기

선택과목 시험에 대한 응시 학년 및 시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일응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을 참고해 보되 선택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응시 학년 및 시험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는 앞서 본 학점 이수 과목 및 이수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한데, 시험 시행 시기는 (1) 법조윤리시험을 참고로 하여 여름방학 때 실시하는 방안, (2) 겨울방학 때 실시하는 방안, (3)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등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방안, (4) 기타 학기 중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현행 법조윤리시험이 여름방학 때 실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이 매년 1월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이 무난한 방안이라 볼 수 있지만, 2과목(6학점) 이수를 전제로 할 때 여름방학 때에만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①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에 선택과목 2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②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부터 2학기 1학기까지 2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 ③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과목 이수 후 시험 응시)가 있을 수 있다.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전문법률 과목을 공부한다는 기준에 의하면 ③의 경우가 바람직한 응시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변호사시험 현실(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그 이외의 수험 부담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떨쳐버리고자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③의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법조윤리 시험도 원래는 2학기 1학기 여름방학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제는 1학기 1학기 응시로 고착화되었음). 이와 반대로 ①의 경우도 가능성이 있으나, 법조윤리시험과 달리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을 전제로 한 전문법률 과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1학년 1학기때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한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②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시험 응시 형태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②의 경우도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2학기 1학기 종료 후 바로 선택과목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험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선택과목 시험은 여

름과 겨울 등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선택과목 선정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고, 학습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sup>52)53)</sup>

이와 같이 1년에 2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기본 법률과목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된 수험생들은 2학년 1학기 여름에 시험을 치를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2학년 2학기 겨울에 응시할 수 있어 선택과목의 조기 이수 및 조기 시험 응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법률 과목에 대해 선행 지식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있어 조기 학점 이수가 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1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법률 과목의 준비를 기본 법률과목 학습 이후로 하는 수험생의 경우 기본법률 과목 수업이 거의 종료되는 3학년 1학기부터 전문법률 과목을 이수하여 현행 시험과 같이 겨울에 변호사시험과 함께 선택과목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1년에 2회 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수험생 니즈에 맞는 시험 응시 시기 결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문법률 과목 선택의 자율성과 변호사시험 대비의 융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선택과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4학기 이수자에 한하여 연 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서 절대평가방식의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sup>54)</sup>한 견해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회 이상 실시는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 5. 선택과목의 추가 방안

현재의 변호사시험법에서는 선택과목을 7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선택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과목들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제도개선

52) 1년에 2회 선택과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법무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3) 사건으로는 1학년 과정에서 기본 과목 공부를 하고(법조윤리시험 응시 포함), 2학년때 선택과목 이수를 하여 2학년 겨울방학 즈음 선택과목 시험에 응시하며, 3학년 과정에서 기본과목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선택과목 시험을 2학년 이후 응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54)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을 하게 된다면 어느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할 것인지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5)</sup>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이고,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1차 시험 과목에 ‘사회보험법’이 있다. 그리고 법무사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 사법시험법<sup>56)</sup> 제2항에서는 필기시험 과목으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이외에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문법률 과목 중 1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는 선택과목을 (1) 도산법, (2) 조세법, (3) 경제법, (4) 지적재산법, (5) 노동법, (6) 환경법, (7) 국제관계법(공법계), (8) 국제관계법(사법계) 등 8개로 규정하고 있다.<sup>57)</sup>

그 이외에도 의료법, ADR, 집합건물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일응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선택과목인 법철학, 형사정책, 일본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인 도산법이 가장 유력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어느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할 것인지는 단편적인 검토나 일부 논의에 의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 도출할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출범 당시 현재와 같이 7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검토와 논의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선택과목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가칭) 「선택과목조정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이곳에서 정기(5년 내지 10년)적으로 선택과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6. 기타 - 향후 학점 이수제의 운영 방향

학점 이수제 도입을 전제로 P/F 방식의 선택형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살

55)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재학 중에는 시험 합격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초법학을 수강할 엄두도 못 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료들이나 후배 로스쿨생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텐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왜 기초법학 수강 등을 통해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심화하는데 소홀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2018. 5. 10.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42735>)

56) 2022년 10월 1일(2019년 법률 제44호에 의해 개정) 기준.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7M60000010084\\_20221001\\_503M60000010019&keyword=%E5%8F%B8%E6%B3%95%E8%A9%A6%E9%A8%93](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7M60000010084_20221001_503M60000010019&keyword=%E5%8F%B8%E6%B3%95%E8%A9%A6%E9%A8%93)

57) 一 倒産法, 二 租稅法, 三 經濟法, 四 知的財産法, 五 勞働法, 六 環境法, 七 國際關係法(公法系), 八 國際關係法(私法系).

펴보았다. 하지만 학점 이수제의 궁극적인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험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시험 제도 자체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전제하에서 시험실시를 전제로 한 방안을 살펴봐왔는데, 이러한 개선안이 마련되어 당분간 안정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차후에는 시험자체의 폐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경우 학점 이수만을 요건으로 할 것인지,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지는 또 다른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개선안(선택형 P/F 시험 실시를 전제로 한 학점 이수제)을 (1)안이라고 하면, (2)안은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한 실무수습 병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 선택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일정기간(방학기간 중 4주~8주)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법 이수자의 경우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경제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법의 경우 각 지방노동위원회, 조세법의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시험자체는 폐지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적인 전문과목 교육에 더하여 실무수습 기관에서 직접 연수를 통해 경험을 쌓게 하면 굳이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검증도 가능하여 추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진출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된다.<sup>58)</sup>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각 선택과목별 전문연수 기관 확보 및 전문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향후 시스템적 마련이 정비되면 (2)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를 변호사법상 전문변호사 등록제도의 등록요건과 연계하자는 취지의 의견<sup>59)</sup>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2)안과 같은 전문기관 연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sup>60)</sup> 이를 통해 전문기관 연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마지막 (3)안으로서 순수한 학점 이수제

58) 참고로 독일의 제2차 사법국가고사에서 평가에 포함되는 핵심역량 과목들을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연계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중 방학기간을 활용한 의무 인턴십 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국회입법조사처, 앞의 보고서, 69면 참고.

59) 로스쿨 정상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해야”, 법률신문 2017. 4. 24.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60) 현재의 재판실무나 검찰실무 과목 운영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입·시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그리고 비판적 지적들도 많았으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의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입학 정원 한정,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낮은 합격률, 과도한 수험 부담 등 문제들이 있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다만 과목별 학습 분량 차이 및 과락 회피 유인 등으로 인해 특정 선택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전문법률 과목 교육이 사실상 형해화된 현 시점에서 더이상 지금의 선택과목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과목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의미 있는 논의들이 많이 도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또한 지금의 개선논의가 과연 실현가능한지, 또다시 이론적 논의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5년이 되었고, 새로운 논의가 아닌 기존에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재점검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근인 2024년 제 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선택과목 제도를 변경하여 가능한 이른 시기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검토한 개선안 중에서는 2과목(6학점) P/F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 등 2회 실시하는 선택형 P/F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점 이수 및 시험 실시 등 2가지 모두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sup>61)</sup> 즉, 시험관리의 안정성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61)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북

은 서울에서만 실시했다가, 지방 로스쿨의 확대 요구에 따라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부터 대전 충남대가 추가되었다.<sup>62)</sup> 이후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다시 부산, 대구, 광주에서의 시험 실시로 확대되었는데,<sup>63)</sup> 당시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이를 격하게 환영하고 어려운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축하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이상 시험장소 확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에서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험장소의 전면적 확대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 상황이 직접 영향을 미쳤다.<sup>64)</sup> 즉,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안된다고 부정했던 것이,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면 실시되었고 그 제도 운영에 우려했던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과 함께 온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선택과목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우려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려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고, 최악의 경우 새로운 길에 정답이 없어 다시 되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희미한 그림자만을 좇아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나아가는 전진은 이제 멈춰야 할 때이다.

---

대학교 2018. 6. 20.자 학술대회 자료집, 발제문 57면 참고.

62) 변호사시험, 내년부터 대전에서도 응시 가능. 법률신문 2013. 10. 11.

<https://www.lawtimes.co.kr/news/79066>

63) 내년 辯試 고사장,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에... 25일까지 원서접수, 법률신문, 2018. 10. 19.

<https://www.lawtimes.co.kr/news/147508>

64) 내년부터 변호사시험 고사장 '전국 25개 로스쿨'로 확대, 법률신문. 2020. 10. 7.

<https://www.lawtimes.co.kr/news/164778>

[참고문헌]

- 강명수,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0.
-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 김창록,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과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북대학교 2018. 6. 20.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인호,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2023. 10. 20., 토론문.
-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북대학교 2018. 6. 20.자 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6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0.
- 신영수, 「2023년도 3개 거점국립대 법학연구소[원] 공동학술대회」, 2023. 10. 20., 토론문
- 정영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2023. 9. 21. 토론문
-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토론문”,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이춘석/참여연대 공동주최, 2013
- 국회입법조사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만10년, 평가와 개선과제 : 변호사시험을 중심으로」, 2019. 12.
- 법무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 12.
- 법무부, 「로스쿨 특성화분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1.
- 법무부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 토론회」, 2023. 9. 21.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2004. 12. 31.
2013. 10. 11.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79066>)
2014. 5. 16.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66>)
2016. 10. 27.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8>)
2016. 10. 28.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79>)
2017. 4. 24. 법률신문(<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3>)

2018. 4. 3. 머니투데이 2018.04.03.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8040216358239404>)
2018. 5. 10.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42735>)
2020. 10. 7.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64778>)
2018. 10. 19.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47508>)
2021. 5. 20.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776>)
2022. 5. 12. 법률저널(<http://www.lec.co.kr>)
2023. 5. 17. 법률저널(<http://www.lec.co.kr>)
2022. 7. 28.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591>)
2023. 5. 18.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86>)
2023. 10. 30. 법률저널(<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30>)

[Abstract]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lective subjects test system in the Bar Exam

Kang, Myung-Soo\*

The law related to the bar exam stipulates seven specialized legal subjects in order to provide a wider range of legal services by producing practitioners with expertise in various fields. Contrary to the intent of the law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specialized law subjects, in reality, due to the burden of studying for basic required subjects and the pressure caused by the low passing rate, students do not select subjects that are actually necessary or interesting, but rather select subjects with the least exam burden and this phenomenon is becoming more and more severe.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the past, but they have not been improved until now.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rt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re has been a decision to take the bar exam using the CBT method. Now is the time to improve the elective subject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time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which is to train legal professionals through education rather than exams, and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elective test system, it is judged that a credit transfer system that requires completion of two subjects (6 credits) will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conduct a multiple-choice P/F test. Exams are conducted twice a year, in the summer and winter. In case of difficulty in obtaining credits, it can be considered students can earn credits at another school or through a common education program. Once this improved system is implemented and establish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require practical training at a specialized institution after completing credits or a plan to recognize the satisfaction of conditions only by completing credits.

---

\* Professor, 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Bar Exam, Law School, Elective subjects, Credit system, Test Scope

